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에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사정보 검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사이버 마약거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고액 벌금·과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지청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로 분리·개편하면서, 분리·개편된 부의 분장사무에 스토킹·노인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직·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

산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반부패 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로 분리·개편하면서, 분리·개편된 부의 각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5. ~ 1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을 “스토킹·장애인·노인”으로 한다.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를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3”을 각각 “515”로 하고, 검찰사무관 “45”를 “46”으로, 검찰주사 “79”를 “80”으로, 검찰서기 “62”를 “61”로 하며, 사서서기 2 다음에 “검찰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13”을 “12”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8”을 “3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1”을 “5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967”을 각각 “7,938”로 하고, 마약수사사무관 “18”을 “21”로, 검찰주사 “1,385”를 “1,379”로 하며, 검찰주사 1,379 다음에 “검찰주사 또는 마약수사주사 1”을 신설하고, 마약수사주사 “66”을 “67”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8”을 “27”로, 검찰주사보 “1,799”를 “1,792”로 하며, 검찰주사보 1,792 다음에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1”을 신설하고, 마약수사주사보 “83”을 “85”로, 검찰서기 “1,033”을 “1,030”으로 하며, 검찰서기 1,030 다음에 “검찰서기 또는 마약수사서기 1”을 신설하고, 검찰서기보 “859”를 “851”로, 마약수사서기보 “52”를 “54”로,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6”을 “25”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4”를 “43”으로, 방호서기보 “139”를 “14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283”을 “1,269”로 한다.

별표 4의 부산지방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란 중 “형사제3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공판제1부”를 “공판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부, 범죄수익환수부, <u>여성아동 범죄조사부</u>,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② ~ ⑭ (생략) ⑮ <u>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u>장애인</u>·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⑯ (생략)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생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국제범죄수사부, <u>반부패·강력수사부</u>, <u>공판제1부</u>, <u>공판제2부</u>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 <u>여성아동 범죄조사제1부</u>, <u>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u>----- -----. ② ~ ⑭ (현행과 같음) ⑮ <u>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u> 1. ----- ----- <u>스토킹</u>·<u>장애인</u>·<u>노인</u>----- ----- 2. 3. (현행과 같음) ⑯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반부패수사부</u>, <u>강력범죄수사부</u>, <u>공판부</u>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13	515	+2
일반직 계	513	515	+2
·	·	·	
·	·	·	
검찰사무관	45	46	+1
·	·	·	
·	·	·	
검찰주사	79	80	+1
·	·	·	
·	·	·	
검찰서기	62	61	-1
·	·	·	
·	·	·	
검찰서기보	<신 설>	1	+1
·	·	·	
·	·	·	
운전서기보	13	12	-1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 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 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 죄조사부, 공공·국제범죄수사 부, <u>반부패·강력수사부</u> , <u>공판</u> <u>제1부 및 공판제2부</u> 를 둔다.	그 분장사무) ①----- ----- ----- ----- -- <u>반부패수사부</u> , <u>강력범죄수사</u> <u>부 및 공판부</u> -----.
② ~ ⑤ (생 략)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u> <u>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u> <u>을 분장한다.</u>
⑦ <u>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제</u> <u>13조제6항·제8항의 사항 및 제</u> <u>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u> <u>다.</u>	⑦ <u>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u> <u>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u>
⑧·⑨ 삭 제 ⑩ <u>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u> <u>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u> <u>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u> <u>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u>	⑩ <u>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u> <u>사항을 분장한다.</u>

·	·	·	
·	·	·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u>28</u>	<u>30</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1</u>	<u>50</u>	-1
·	·	·	
·	·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967</u>	<u>7,938</u>	-29
일반직 계	<u>7,967</u>	<u>7,938</u>	-29
·	·	·	
·	·	·	
마약수사사무관	<u>18</u>	<u>21</u>	+3
·	·	·	
·	·	·	
검찰주사	<u>1,385</u>	<u>1,379</u>	-6
<u>검찰주사 또는 마약수사주사</u>	<신 설>	<u>1</u>	+1
마약수사주사	<u>66</u>	<u>67</u>	+1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8</u>	<u>27</u>	-1
검찰주사보	<u>1,799</u>	<u>1,792</u>	-7
<u>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u>	<신 설>	<u>1</u>	+1
마약수사주사보	<u>83</u>	<u>85</u>	+2
·	·	·	
·	·	·	
검찰서기	<u>1,033</u>	<u>1,030</u>	-3

<u>검찰서기 또는 마약수사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검찰서기보	<u>859</u>	<u>851</u>	-8
마약수사서기보	<u>52</u>	<u>54</u>	+2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26</u>	<u>25</u>	-1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44</u>	<u>43</u>	-1
·	·	·	
방호서기보	<u>139</u>	<u>14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83</u>	<u>1,269</u>	-1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